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0. 20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0.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1998. 12. 16

-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98. 10. 26) 상정
-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 의결(98. 12. 16)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가. 제안이유

- 98. 3. 1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활동과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의 폐지 등 간접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시에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존규제의 폐지, 신설되는 규제의 심사 등 종합적인 규제사무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설치근거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시의원이 몇 명입니까?	○ 3명입니다.
○ 안 제2조 기능 중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중복된다고 보는데요?	○ 네, 심의 조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안 제4조 위원장의 유고서 "위원 중에서 호선"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의 유고서 안 제5조의 회의소집과 상충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52 호
의결년월일	98. 12 26 (제67회)

제출년월일 : 1998. 12. 26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의결"보다는 "심의, 조정"의 기능이며, 안 제5조 회의소집권자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장의 유고시 회의소집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당초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에서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위원장직무대행자를 변경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 기능 중 "심의, 의결"을 "심의, 조정"으로 하고 안 제4조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에서 "위원 중 연장자"로 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u>의결</u>한다.</p> <p>1~3 (생략)</p> <p>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p>	<p>제2조(기능) <u>조정</u>.....</p> <p>1~3 (제정안과 같음)</p> <p>4. 규제개혁.....</p> <p>...</p>

제정안	수정안
5~6 (생략)	5~6 (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u>호선된</u>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u>연장자</u>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간사) <u>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u>
부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00. 12. 31</u> <u>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	부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의결”을 “조정”으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개선”을 “개혁”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호선된 자”를 “연장자”로 한다.

안 제7조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포함]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규제개혁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